

2017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20억 6천 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1천 9백만원(0.5%)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21,942	21,942	22,061	119	119	0.5	0.5	
세외 수입	경상적	3,325	3,325	3,325	0	0	0	0
	임시적	7,001	7,001	7,001	0	0	0	0
보 조 금	11,578	11,578	11,697	119	119	1.0	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	38	38	0	0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21,942	21,942	22,061	119	119	
세외수입		10,326	10,326	10,326	0	0	
경상적세외수입		3,325	3,325	3,325	0	0	
임시적세외수입		7,001	7,001	7,001	0	0	
보조금		11,578	11,578	11,697	119	119	
국고보조금등		11,578	11,578	11,697	119	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	38	38	0	0	

2. 세출

○ 평생교육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770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4,114억 8천 8백만원 대비 10.7%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계		3,411,488	3,411,488	3,777,035	365,547	365,547	10.7%	10.7%
행정관리	소계	3,411,488	3,411,488	3,777,035	365,547	365,547	10.7%	10.7%
	행정운영경비	309	309	0	0	0	0	0
	재무활동	0	0	153	153	153	순증	순증
	사업비	3,411,179	3,411,179	3,776,882	365,394	365,394	10.7%	10.7%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411,488	3,411,488	3,777,035	365,547	365,547	10.7%	10.7%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2,600	2,600	3,800	1,200	1,200	46.2%	46.2%
서울장학사업 추진	11,111	11,111	11,141	30	30	0.3%	0.3%
지방세 전출	1,267,922	1,267,922	1,503,222	235,300	235,300	18.6%	18.6%
담배소비세 전출	254,329	254,329	246,916	△7,413	△7,413	△2.9%	△2.9%
지방교육세 전출	1,492,338	1,492,338	1,607,901	115,563	115,563	7.7%	7.7%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827	827	838	11	11	1.3%	1.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 지원	2,639	2,639	2,669	30	30	1.1%	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259	2,259	2,476	217	217	9.6%	9.6%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20,013	20,013	20,991	978	978	4.9%	4.9%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 운영	4,276	4,276	4,526	250	250	5.8%	5.8%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245	3,245	3,387	142	142	4.4%	4.4%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	-	60	60	60	순증	순증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2,931	2,931	3,216	285	285	9.7%	9.7%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5,265	5,265	5,769	504	504	9.6%	9.6%
시립청소년음악창작 센터 건립	300	300	0	△300	△300	△100.0 %	△100.0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2,115	2,115	300	△1,815	△1,815	△85.8%	△85.8%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708	4,708	4,091	△653	△653	△13.9%	△13.9%
시립청소년음악창작 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0	0	300	300	300	순증	순증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0	0	1,815	1,815	1,815	순증	순증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53	653	653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청소년과)	-	-	151	151	151	순증	순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47,900	147,900	166,138	18,238	18,238	12.3%	12.3%
국고보조금 반환(친환경과)	-	-	2	2	2	순증	순증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20억 6천 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1천 9백만원(0.5%)이 증가된 수준으로, ‘국고보조금등’ 1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제출하였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21,942	21,942	22,061	119	119	0.5	0.5
세외 수입	경상적	3,325	3,325	3,325	0	0	0	0
	임시적	7,001	7,001	7,001	0	0	0	0
보 조 금		11,578	11,578	11,697	119	119	1.0	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	38	38	0	0	0	0

-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서 1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개 사업에서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 체계(CYS-Net) 구축지원(1천5백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8백만원)”이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4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지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이후(2018.12.12.)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이를 국비·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긴급구조 사업과 자치구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예산안제출 이후 확정된 국비 사업

- 긴급구조사업 : 48만원(국비 24만원, 시비 24만원)
 - 긴급구조사업은 일시 보호소를 운영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9천만원 기편성
- 자치구 센터 사업비 지원(국비1,420만원, 시비 1,520만원)
 - 자치구의 청소년상담지센터 24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2억5천만원이 기편성

-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에 따라 전년도 9월15일까지 예산안을 서울시로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관련된 내역이 국회에서 수정(2018.12.8.)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뒤늦게 변경·확정(2018.12.12.)하여, 서울시는 국비 확정시기지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평생교육국은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예산이 수정된 사업 내역

-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온라인 홍보)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국외 초청연수)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청년 참여 플랫폼)
 - 청소년시설확충(지역자율)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보수와 동반자 운영비 및 활동비 등 국가보조금 1억 8백만원을 세입에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지원”과 마찬가지로 늦은 국비확정(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 청소년동반자(청소년상담사) 일부(168명 중 3명)의 보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편성된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예산으로 선집행한 예산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산 및 사업운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의 국비변경 현황 〉

(단위:천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618,450) 3,386,900	(x1,622,590) 3,245,180	(x-4,140) 141,720
민간위탁금	(x166,850) 483,700	(x166,850) 333,700	(x-) 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451,600) 2,903,200	(x1,455,740) 2,911,480	(x-4,140) △8,280

※ 국비 414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414만원이 감액하여, 총 828만원을 감액함.

-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감액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사업과 같이 국·시비의 분담비율(국비1:시비1)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국비의 감소에 따라 시비도 감액되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770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4,114억 8천 8백만원 대비 10.7%(3천 655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교육정책과는 5건(3,531억원), 평생교육과는 1건(1,100만원), 청소년정책과는 9건(26억1천16백만원), 친환경급식과는 2건(182억원) 등 17개 세부사업에서 3,65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정전출금” 중 ‘담배소비세’는 2.9%(74억1천3백만원)를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평생교육국 소관 증액편성 내역(3천 655억원) 중 법정전출금(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이 94.0%(3천 434억원)이며, 일반사업예산은 6.0%(220억 9천 7백만원) 수준임.
- 또한, 서울시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일반예산에서 3개 사업, 27억 6천 8백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 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411,488	3,411,488	3,777,035	365,547	365,547	10.7%	10.7%	
행정 관리	소 계	3,411,488	3,411,488	3,777,035	365,547	365,547	10.7%	10.7%
	행정운영경비	309	309	0	0	0	0	0
	재무활동	0	0	153	153	153	순증	순증
	사업비	3,411,179	3,411,179	3,776,882	365,394	365,394	10.7%	10.7%

가.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내진보강 등 긴급하게 발생한 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국은 최근 사업수요 증가로 상반기 중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26억원) 대비 46.2%(12억원)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3,800,000	2,600,000	1,200,000	46.2%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800,000	2,600,000	1,200,000	46.2%

-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안 심의·의결 시 평생교육국에서 미편성(사유 : 교육청의 예산편성)하였으나,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수정·의결한 예산으로,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학교의 긴급한 수요는 매년 반복되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정례화하여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서울장학사업 추진

-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3천만원)하려는 것임.

〈 “서울장학사업 추진”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서울장학사업 추진	11,141,308	11,111,049	30,259	0.3%
출연금	11,141,308	11,111,049	30,259	0.3%

- 채용할 신규직원은 총 2명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학사업 방향성의 변화(등록금 지원→장학생 성장 및 활동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사회인 멘토링, 지식공유, 커뮤니티 활동, 공익 콘텐츠, 강연 등)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에 맞추어 현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서울장학재단의 정·현원 현황 〉

(정원/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일 반 직				
		임원	2급	3·4급	5급	6급
계	13/10	1/0	1/1	2/2	4/4	5/3

- 서울장학재단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0명으로, 금번 예산편성을 통해 2명이 증원되더라도 여전히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바, 서울장학재단의 정원이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산출된 인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업무분석을 통해 적정한 정원 산정 및 인력 운용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법정전출금(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 법정전출금은 2018년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1,917억 5천 211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1,155억 6천 251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감액, △74억 1천 306만 3천원)은 감액하며, 지방세 전출금 중 「지방세법」 개정(2018.12.)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11%→15%, 인상분 4%, 435억4천74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434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이하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2)

〈 “법정전출금”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법정전출금	3,358,037,281	3,014,588,324	343,448,957	10.2%
지방세 전출	1,503,221,447	1,267,921,937	235,299,510	18.6%
담배소비세 전출	246,915,687	254,328,750	-7,413,063	-2.9%
지방교육세 전출	1,607,900,147	1,492,337,637	115,562,510	7.7%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8 회계연도 전출금 차액과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금번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³⁾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재정여건에 따라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정전출금의 차액을 전출할 수 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의 편차에 따라 전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편성과 교육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교육청의 안정적 자원운용을 위하여 원칙에 따라, 예측가능한 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 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8회계연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백만원)

	징수총액 (지난년도 시세포함)	적용비율	전출대상액	기전출액	미교부액	2019 추경예정액
소 계	16,476,115		3,269,228	2,969,326	299,902	299,902
지방세	14,294,459	10%	1,421,922	1,230,170	191,752	191,752
담배소비세	607,910	45%	273,559	280,972	△7,413	△7,413
지방교육세	1,573,746	100%	1,573,746	1,458,184	115,563	115,563

〈 2018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의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세목	2018년		지난년도 시세징수액	징수액합계	법정전출금 대상여부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징수액					
합 계							3,269,228
1)보통세	14,379,464	14,155,135	139,324	14,294,459			1,421,922
취득세	5,211,568	5,191,737	7,808	5,199,545	대상	10%	519,955
레저세	135,150	135,150	-	135,150	대상	10%	13,515
담배소비세	607,910	607,910	-	607,910	대상	10%	60,791
지방소비세	1,399,063	1,399,063	-	1,399,063			-
5%분	571,472	571,472	-	571,472	대상	10%	57,147
6%분취득세	827,591	827,591	-	827,591	대상	10/11*10%	75,236
주민세	547,696	539,899	6,001	545,900			-
균등분	58,641	51,455	5,417	56,872	대상	10%	5,687
지방소득세	5,622,934	5,494,275	59,038	5,553,313	대상	10%	555,331
자동차세	1,344,198	1,275,546	67,061	1,342,606	대상	10%	134,261
2)담배소비세	607,910	607,910	-	607,910	대상	45%	273,559
3)지방교육세	1,501,117	1,472,237	26,274	1,498,511	대상	100%	1,498,511
4)지방소비세6% 분지방교육세	827,591	827,591	-	827,591	대상	1/11*100%	75,235

라.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사업은 서울영어·창의마을 이용자 참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하 ‘제로페이’)으로 결제 시 감면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838,778	827,236	11,542	1.4%
사무관리비	3,400	3,40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6	976	0	0.0%
민간위탁금	834,402	822,860	11,542	1.4%

- 제로페이 이용률을 전체 사용자 중 30%로 추계하고, 할인을 5%로 하여 감면보전액 1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영어·창의마을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와 결제수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체입소가 70.5%,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7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감면보전액으로 편성한 예산도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바, 산출기초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 결제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총 금액	결제자 구분		결제 수단 구분			
		단체결제	개인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현금결제	
소계	비율	100%	70.5%	29.5%	23.2%	76.6%	0.2%
	금액	14,571,982	10,276,167	4,295,815	3,383,871	11,159,024	29,087

2016	5,604,474	3,965,486	1,638,988	1,192,195	4,394,699	17,580
2017	4,546,856	3,038,934	1,507,922	1,137,764	3,403,046	6,046
2018	4,420,652	3,271,747	1,148,905	1,053,912	3,361,279	5,461

※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영어·창의 마을의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손실액 산출기초 〉

기준 연도	개인 참가자 결제액	제로페이 이용 예상액 (30%)	손실액 (8개월, 5%감면)
18.1~12월	1,154,235천원	345,271천원	11,542천원

〈 영어·창의 마을의 2019년 제로페이 월별 사용 실적〉

구분	총	제로페이 결제		
		수유캠프	관악캠프	풍납캠프
계	49건, 5,095천원	17건, 2,414천원	26건, 2,401천원	6건, 280천원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3건, 130천원	-	-	3건, 130천원
5월	46건, 4,965천원	17건, 2,414천원	26건, 2,401천원	3건, 150천원

마. 국고보조금 확정(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긴급구조사업, 국비24만원, 국·시비 1:1매칭)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센터 사업비, 국비 1,420만원, 국·시비 1:1매칭)의 국비보조금이 서울시 예산편성액과 다르게 확정되어 국비에 대한 시비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2,952만원) 편성하려는 것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2,668,020	2,638,500	29,520	1.1%
사무관리비	3,300	3,300	0	0.0%
민간위탁금	386,400	385,920	48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78,320	2,249,280	29,040	1.3%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액(1억8백만원)분에 대한 시비(1억8백만원)를 반영하여 2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475,920	2,259,212	216,708	9.6%
민간위탁금	2,475,920	2,259,212	216,708	9.6%

- 청소년 동반자는 2019년 현재 168명(전일제 36명, 시간제 1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161명에서 2019년 7명(전일제, 2018년 29명→2019년 36명)이 증가였으나, 여성가족부는 165명의 인건비만 편성 및 통보(가내시 2018.9.)하고,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

그 후 여성가족부는 168명의 인건비를 모두 편성 후 확정(2018.12.12.)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 여성가족부 2018년 9월(가내시)과 12월(확정내시) 예산 비교 〉

(단위:천원)

구분	계	전일제	시간제	수석동반자 (2명)	정규직 전환단가
2018.9. (가내시)	2,259,212	806,780	1,448,832	3,600	0
2018.12. (확정내시)	2,475,920	1,011,240	1,452,000	3,600	9,080
차 이	216,708	204,460	3,168	0	9,080

-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와 본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기초가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가족부의 잦은 인건비 기준변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18년 여성가족부의 동반자 인건비(연봉) 변경 내역 〉

(단위:천원)

	2018.9. 기준 (2019예산편성 기준)	2018.12. 기준 (2019 추경편성 기준)	차액
전일제	27,820	28,090	270
시간제	10,976	11,000	24

- 평생교육국은 편성한 예산과 실제 동반자 운영현황의 차이 및 산출기초의 잦은 변경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비정상적인 동반자 운영을 하였는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조속한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사업의 안정성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9년 청소년 동반자 배치현황 〉

(단위:명)

구분	센터명	청소년동반자수		
		전일제	시간제	소계
소 계		36	132	168
서울시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7	9
종로구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용산구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성동구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광진구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5	7
중랑구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성북구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강북구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구분	센터명	청소년동반자수		
		전일제	시간제	소계
도봉구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노원구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6	8
은평구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6	8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마포구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6	8
양천구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강서구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6	8
구로구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6	7
금천구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6	7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3	6
동작구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관악구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	6
서초구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6	7
강남구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6	8
송파구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6	7
강동구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3	6

3)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 박람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금’은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414만원)분과 변경에 따른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시비(414만원)를 감액(총 828만원)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386,900	3,245,180	141,720	4.4%
민간위탁금	483,700	333,700	150,000	4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03,200	2,911,480	-8,280	-0.3%

- ‘민간위탁금’ 증액(1억5천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박람회 개최비용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평생교육국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짐.
-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형 뿐만 아니라 비행, 은둔, 직업모색 등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구(24개소, 중구는 시립으로 운영중)의 청소년 지원 센터(자치구 꿈드림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14만원 감액에 따라 이를 국·시비 분담비율(1:1)에 맞춰 시비도 414만원을 감액하여 총 828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매칭사업(국·시·구의 분담비율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국비를 기준으로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규모가 정해지며, 국비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는 더 큰 규모로 영향을 받고 있는바, 국비의 증감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꿈드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2천380만원), 민간위탁금(8천7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8천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20,991,265	20,013,435	977,830	4.9%
사무관리비	113,427	113,427	0	0.0%
공공운영비	226,840	226,84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0.0%
전산개발비	23,830	0	23,830	순증
기타보상금	70,000	70,000	0	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0	100,000	0	0.0%
민간위탁금	20,368,368	19,498,368	870,000	4.5%
자산및물품취득비	84,000	0	84,000	순증

- ‘전산개발비’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제로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 2천38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제로페이 감면손실분 보전을 위해 증액(8억7천만원)하는 것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의 서버증설(8천4백만원) 등을 위해 증액하는 것임.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예외규정 〉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탁기관이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최소기능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

- 수탁기관이 사회복지통합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① 별도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② 위탁사무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단,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을 주관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 최소기능 : 계좌 거래내역 전송(매일), 총계정원장 등록(매월)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 서울시와 시금고 은행이 협약을 맺어 서울시 보조금 지출내역을 입력·확인하는 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 서울시 청소년시설(90여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전산 시스템(회원관리, 회계관리, 전자문서, 인사관리, 자산관리)을 총괄 관리하는 시

시스템으로, 각 시스템 간 연동이 되어 있어 보조금 지출내역 뿐 아니라 시설 자체 사업추진실적 등도 입력하여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 보조금관리시스템와 통합정보시스템 비교 〉

구 분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회계·회원·전자문서 시스템 등
관리사무	서울시 보조금 사업	서울시 보조금, 시설 자체사업 총괄 관리
시스템 기능	서울시 보조금 단순 입·출력 기능	사업비 입·출력, 사업운영실적 통계, 결산검사 등 종합적 자료 활용 가능
시스템 연동 및 통합관리 기능	연동 및 통합관리기능 부재 (지출내역 입력·확인만 가능)	회원등록, 회계, 자산, 인사 등 연동 및 통합관리
회계처리방법	단식부기	복식부기

-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전산개발비(‘통합정보시스템’과 제로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와 ‘민간위탁금(제로페이 감면손실분 보전)’의 증액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제로페이 감면정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정책이고, 청소년시설은 소상공인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바,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청소년시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며, 2020년 1월에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전산개발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예산의 증액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운용 상황 및 제도운용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 감면손실분 보전을 위해 증액한 금액은 8억 7천만원이나, 27개 청소년시설의 2019년 제로페이 결제 현황을 보면, 5월 한 달 간의 결제액이 6억 8천만원으로, 감면보전액은 6천 8백만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의 제로페이 결제 수 및 금액의 증가상황을 감안하면, 평생교육국에서 증액한 예산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감면보전액의 부족분 발생 시 추가보전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7개 청소년시설의 2019년 제로페이 결제 현황 〉

(단위: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수	결제액	건수	결제액	건수	결제액	건수	결제액	건수	결제액	건수	결제액
7,307	704,545	36	1,886	93	3,630	229	6,838	804	16,689	6,145	684,884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8천4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지난 2017년 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 속도저하, 저장공간 부족, 백업시스템의 부재, 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용환경 개선(속도저하의 개선, 서버분리), 저장장치 확충, 백업시스템 구축,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나, 시스템 구축 이후 2년만에 성능개선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만 있을 뿐 보안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추진에 있어 성능개선 뿐 아니라 보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상담·치료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중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하 ‘서대문센터’)의 이전하기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526,215	4,276,215	250,000	5.8%
민간위탁금	3,666,215	3,666,215	0	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0,000	610,000	0	0.0%
민간위탁사업비	250,000	0	250,000	순증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개요 〉

- 현 수탁기관 :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사회교육관 2층
- 시설규모 : 295㎡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등
- 위탁기간 : 2년(2018.7.1~2020.6.30.)

- 서대문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개관 이후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서 수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서대문센터는 명지학원의 소유물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립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명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센터’였는바,

이에 의회는 2016년 조례개정⁴⁾을 통하여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이 수탁기관의 부속화, 종속화된다는 문제가 지적(2016~2018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2018년 4월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등)된바 있음.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위탁 현황 〉

- 2010.5.10.~ 2013.6.30. 3년,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13.7.1. ~ 2015.8.31. 2년,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15.9.1. ~ 2018.6.30. 3년,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18.7.1. ~ 2020.6.30. 2년,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수탁기관 내 위치하고 있는 시립시설을 외부 공간(서대문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수탁기관의 부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 사설화를 방지하고, 타 청소년단체들에게 시립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이전계획 〉

시설 이전계획

○ 이전장소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 1층 유아체능단 실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연희동)

○ 사용면적 : 5,804㎡(3층) 중 155.39㎡(1층 일부)

소요예산 : 250백만원 (리모델링:210백만원, 이전비용:10백만원, 기타:30백만원)

향후계획 : 예산 반영(추경, 2019.6.)→ 리모델링 등(2019.8.~10.)→이전(2019.11.)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6년 5월 19일 개정

- 다만, 서대문센터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부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국이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의 통합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각각 다른 청소년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청소년에게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과 함께 특정 청소년단체가 이를 일괄 수탁하여 독·과점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수탁기관의 수를 줄여 평생교육국의 관리업무를 축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 간 경쟁과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시립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을 개별 위탁하는 방안과 통합위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 “시립 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종로구 신영동 저류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저류조 및 청소년수련관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60,357	0	60,357	순증
시설비	60,357	0	60,357	순증

- 종로구는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자치구로, 청소년활동의 영역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⁵⁾에 따라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수련관 설치현황 〉

(단위:천원)

구분		미설치	1개소 설치	2개소 설치	3개소 설치
시립	자치구명	종로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중구, 중랑, 중구(2)	강남
	개소	1	16	4	1
구립	자치구명		용산, 관악	중구, 강서, 서초(2), 송파(2)	강남
	개소		2	6	2

- 다만, 부지의 적정성, 대체부지 선정의 타당성, 본 예산편성의 적정성, 향후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는 3차례 변경(홍지동→신영동→홍지동→신영동)이 있었고, 변경이유는 모두 부지의 적정성 부족에 있었음.

※ 홍지동 부지의 부적정 사유 : 급격한 경사면을 가진 부지이며, 지하에 암반이 있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교량과 연결되어 있어, 교량의 증설 없이는 차량의 진출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나, 교량의 증설은 홍제천 복원계획과 상충되어 교량증설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의 심사보류가 있었음.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신영동 부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지하에 저류조를 건설하고 지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복합공사로,

첫째, 복합공사로 인한 과도한 건설비용의 문제, 둘째, 부지가 구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종로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인근에 보물(보물 제235호,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서울 莊義寺址 幢竿支柱))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넷째, 지하공간에 저류조가 있어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건물활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섯째,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교부한 저류조 건설비용(재해대책기금) 81억은 본 사업의 공사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미회수 상태인 점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신영동 부지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물 제235호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서울 莊義寺址 幢竿支柱)

백제와의 싸움으로 황산(지금의 논산으로 추정)에서 전사한 신라의 장수 장춘량과 파랑(罷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라 무열왕 6년(659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며,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세워두는 것으로, 절에서는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깃발을 걸어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장단 보고(2018.12.18.) 후 대체부지 물색을 시작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신영동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종로구와 협의(2019.1.15.)를 시작하였는바, 신중한 대체부지 물색이 있었는지 여부와 탁상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예산은 신영동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종로구는 2013년 본 부지에서 건립타당성 용역(2013.7.~2013.11.) 후 신영동이 아닌 홍지동으로 재검토를 요청 하면서, 홍지동 건립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는바, 예산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종로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의 참고 등 당해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예산지출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용역업체명	용역기간	지출금액	지출일	비고 (발주/예산)
홍지동부지 건립 타당성 용역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1.12.~12.02.	18,950	2012.02.28	종로구 (구비)
신영동부지 건립 타당성 용역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3.07.~13.11	20,022	2013.11.20	종로구 (시비)
홍지동부지 건립 타당성 용역(보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5.06.~15.07.	4,850	2015.07.21	종로구 (구비)

※ 홍지동 부지에서는 부지특성(암반), 교통환경(진출입로), 관련 계획(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 복원계획)에 대한 검토 조차도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하여 수련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바, 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주변여건, 청소년의 접근성, 건물의 활용성 등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국의 적정하다는 판단 이후 외부 용역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본 사업은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들이 있어, 이런 절차를 끼워맞추기식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조건부 적정’ 등의 사업추진이 아닌 적절한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로청소년 수련관 추진 경위 〉

- 2011.10.01.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요청
- 2011.12.~2012.3. 건립타당성 용역시행(종로구)
- 2012.03.22. 종로구(홍지동) 부지 건립 요청(종로구 → 서울시)
- 2012.5. 서울시의 부적정 의견 회신(토지활용도, 공사비, 접근성 등)
- 2012.10.17. 종로구(신영동) 건립제안(시·구 간담회)
- 2013.7.~2013.11. 신영동 건립타당성 용역시행(종로구)
- 2013.12.20. 종로구(홍지동) 부지 재검토 요청 (종로구 → 서울시)
- 2014. 9. 3. 홍지동 부지 건립계획 보완제출(종로구 ⇒ 서울시)
- 2015. 1.27 시·구 정책협의회(신영동 신축진 관 → 빠른추진 가능한 홍지동선정)
- 2015.6.~2015.7. 건립 타당성 용역(종로구)
- 2015. 6.29. 투자심사분석자료 제출(타당성용역 재검토, 종로구→서울시)
- 2015. 7.13.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수립
- 2016. 3. 2. 중앙투자심사(조건부-접근성 제고 등)
- 2016. 5. 2.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7. 9.20.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보류, 입지조건, 진출입로 등)
- 2018. 6.25.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개최(결과:보류, 진출입로)
- 2018.11.21.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개최(결과:보류, 입지조건)
- 2018.12.18. 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장단)보고(대체부지물색)
- 2019.1. 15. 신영동 부지 건립 협의(종로구→시)
- 2019. 2. 13. 교환 부지(2개소) 협의(종로구→시, 효자동, 원서동)
- 2019. 3. 25. 재해대책기금(81억원) 회수 방안 논의(시·구 관련부서)

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3,216,000	2,931,000	285,000	9.7%
사무관리비	25,000	25,000	0	0.0%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250,000	0	0.0%
민간위탁금	1,841,000	1,556,000	285,000	1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000	1,100,000	0	0.0%

- ‘민간위탁금’은 최초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7억5천만원), 청소년 인생성장 지원체계 구축(5천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5억원)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인턴십 사원’과 ‘학업 및 자격 취득 학습 지원’ 사업의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1) 인턴십 사원

- ‘인턴십 사원’은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인턴십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 2회(상·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03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을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1억3천5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인턴십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
- 사업기간 : 3개월 간(4~6월, 7~9월), 연 2회 실시
- 운영기관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남구 삼성동)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인턴십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예산〉

(단위: 명 / 천원)

구 분	대상자수	인턴십 예산	비 고
2017년	36	31,500	-
2018년	103	95,000	-
2019년(4월말)	87	140,000	-

- 본 사업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인턴십 지원대상 및 신청현황도 바리스타, 목공,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여러 신청 창구를 통해, 미래의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ET(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ST(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CT(문화콘텐츠기술, Cultural Technology) 등)의 견문을 넓히는 등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턴십 유형별 현황〉

(단위:천원)

분야	계	바리스타	보조사	목공	제과제빵	매장관리	사서접	팩업	디자인	공방	기타
2017년	36	21	2	3	1	3	0	1	0	3	2
2018년	103	41	9	7	5	4	4	3	3	3	24
2019년	87	35	2	8	8	5	6	5	4	6	8

2)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 “학업 및 자격취득 학습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본 사업에서의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청소년

**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온·오프라인 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 본 사업은 꿈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경찰, 교육청, 대안학교, 꿈드림센터 및 보호관찰소로 추천 후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꿈드림센터의 실무자 학습비 집행 및 학습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 사업을 통해 학력 및 자격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18년 사업계획(141명) 대비 실제 학습한 인원(120명)은 85.1% 수준인바, 본 사업의 양적 확대 이전에 관리방식의 효율화 및 적절한 수의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도포기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및 각 기관(자치구 꿈드림센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실적 〉

기관명	계획인원 (명)	실제인원 (명)	총교부액 (원)	집행액 (원)	집행잔액 (원)
소계	141	120	141,000	97,889	43,111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	16	18,000	12,696	5,304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1	3,000	1,000	2,000

기관명	계획인원 (명)	실제인원 (명)	총교부액 (원)	집행액 (원)	집행잔액 (원)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	9	9,000	9,000	-
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	4	4,000	2,101	1,899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7	7	7,000	3,649	3,351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	5	5,000	5,000	-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3	3,000	2,474	526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8	5	8,000	4,367	3,634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	4	5,000	2,698	2,302
마포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1	1,000	690	310
양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	2	2,000	1,985	15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3	3,000	2,670	330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	6	6,000	4,334	1,666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	9	10,000	7,210	2,790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	6	6,000	5,140	860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	2	4,000	1,832	2,168
서초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	2	2,000	1,660	340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	4	5,000	3,174	1,826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2	3,000	1,907	1,093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	4	5,000	4,000	1,000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	15	20,000	14,580	5,420
서울서부보호관찰소	6	5	6,000	2,800	3,200
서울북부보호관찰소	6	5	6,000	2,922	3,078

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단가를 교육청의 기준으로 편성하기 위한 급식비 추가분(1억1천9백만원)과 비인가 대한교육기관의 기자재(책걸상, pc 등)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3억8천4백만원) 등 총 5억 3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 급식비 2019년 서울시 교육청 단가 반영
 - 학교 밖 청소년 950명 지원 : 119,350천원
 - 1식 당 초등과정 3,628원, 중고등과정 5,406원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5,768,756	5,265,070	503,686	9.6%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0	0.0%
민간위탁금	5,468,756	4,965,070	503,686	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0	0.0%

-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초·중등교육법」)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헌법적 가치 및 서울시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기본법」)라는 당위성이 있는바,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헌법」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상향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증액 조정은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별없는 교육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비인가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생 수 및 교육일수의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비용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금’ 증액 중 3억 8천 4백만원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책결상 및 PC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자재들이 노후됐거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예산 편성항목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첫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를 수행하는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둘째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민간위탁금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민간위탁금의 수령주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책걸상 및 PC 등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본 민간위탁금의 수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는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가 직접지원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당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통계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4개 통계목이 있으나, 각각 통계목별 제한 사유로 인해 편성이 곤란한바, 본 사업이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적정한 예산과목이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통계목별 편성 불가 사유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공작물로 한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에 대한 보조 원칙’, 자본적 경비 제외
-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사업 분야로 한정, 본 사업은 청소년 분야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자치단체가 민간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자본형성 적 보조가 가능하나, 서울시는 본 사업을 학교 밖 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또한, 현재까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품지원이 아닌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을 통해 물품을 지원할 경우 관리책임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비인가 대안학교별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분	순번	학 교	구분		지원총계
			인건비/사업비	급식비	
합 계			2,228,250	545,024	2,773,274
도시형 대안학 교	1	공간민들레	51,000	16,702	67,702
	2	꿈지락학교	51,000	8,628	59,628
	3	꽃피는학교	51,000	17,449	68,449
	4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51,000	9,872	60,872
	5	꿈이룸학교	38,250	11,309	49,559
	6	꿈이 있는 학교	51,000	6,362	57,362
	7	꿈터학교	51,000	10,784	61,784
	8	꿈틀학교	51,000	12,743	63,743
	9	내일새싹학교	51,000	13,162	64,162
	10	다음학교	51,000	37,225	88,225
	11	단재학교	51,000	9,531	60,531
	12	대안학교 원두	51,000	5,232	56,232

구분	순번	학 교	구분		지원총계	
			인건비/사업비	급식비		
	13	대안학교 한들	51,000	7,899	58,899	
	14	돈보스코영상학교	51,000	2,242	53,242	
	15	동방학교	51,000	7,190	58,190	
	16	로드스폴라	51,000	16,440	67,440	
	17	사람사랑나눔학교	51,000	0	51,000	
	18	사랑의학교	51,000	7,909	58,909	
	19	삼각산재미난학교	51,000	23,208	74,208	
	20	성미산학교	51,000	67,783	118,783	
	21	성장학교 별	51,000	30,473	81,473	
	22	아름다운학교	51,000	34,316	85,316	
	23	영세프스쿨	51,000	5,720	56,720	
	24	우리들학교	51,000	30,196	81,196	
	25	은평씨앗학교	51,000	9,732	60,732	
	26	이룸학교	48,000	8,788	56,788	
	27	인디학교	51,000	11,023	62,023	
	28	자오나학교	51,000	6,524	57,524	
	29	틱옴터학교	51,000	8,599	59,599	
	30	푸른나무미디어학교	51,000	6,158	57,158	
	31	하자작업장학교	51,000	15,812	66,812	
	32	1318 상상발전소	51,000	3,112	54,112	
	징검다리 거점공간	33	주	51,000	4,683	55,683
		34	꿈꾸는다락방	51,000	13,590	64,590
		35	나도꽃	51,000	0	51,000
		36	도깨비	51,000	7,757	58,757
		37	몽담몽담	51,000	10,181	61,181
		38	바라지	51,000	6,586	57,586
		39	스쿨제프	51,000	8,628	59,628
		40	와락	51,000	5,674	56,674
		41	작공	51,000	12,203	63,203
		42	캔틴스쿨	51,000	2,284	53,284
		43	틱옴	51,000	6,532	57,532
		44	하품	51,000	4,784	55,784

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182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통계목별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66,138,171	147,900,491	18,237,680	12.3%
사무관리비	19,966	19,966	0	0.0%
국내여비	2,000	2,00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66,113,205	147,875,525	18,237,680	12.3%

-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011년 공립초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에는 공립초, 국·사립초, 국·공·사립중, 국제중(1개교) 및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 학교급식 추진경위 〉

- 2011. 11. 공립초 5~6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2. 1. 공립초 전체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3. 1.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4. 1. 공립초 및 국·공·사립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2019. 1. 초·중 및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의 경비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분담(30%:50%:20%)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추진시기 및 자치구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급식은 일부 자치구(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2018.11.21.)에 따라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하게 되었고, 국·사립초의 경우에도 당초 11개 자치구, 21개교에서 16개 자치구, 36개교로 확대되었음.

〈 2019년 예산편성 시 학교급식 추가 대상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고등학교	국사립초
참 여 자치구	9개 구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11개구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
지원기준	· 급식일수 : 168일 · 급식단가 : 5,406원	· 급식일수 : 188일 · 급식단가 : 4,649원
학 생 수	96개교 23,512명	21개교 11,697명
소 요 액	9,472백만원	

※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 이후 학교급식 대상 추가계획

○ 고등학교 : 2019년 추가 참여 16개 자치구

- 자 치 구 : 종로,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지원학교 : 16개 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224개교, 61,188명(3학년)

○ 국·사립초, 국제중학교 : 2019년 추가 참여 5개 자치구

- 자 치 구 : (사립초)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서초 (국제중) 강북
- 지원학교 : 5개구 소재 국·사립초 15개교, 7,613명(전학년)
1개구 소재 국제중 1개교 487명(전학년)

- 평생교육국은 학교급식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대상추가에 따른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본 사업은 매년 과도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본 증액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최근 3년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8	136,005	129,579	-	6,426	4.7%
2017	129,507	125,789	-	3,718	2.8
2016	132,027	125,898	-	6,129	4.6

학교급식의 대상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점검 대상도 증가하게 되고, 현재 학교급식은 매년 200여개 학교를 소수의 인력이 단기간 내에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인력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 담보, 정산내역, 재고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점검방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학교급식 점검 계획 〉

- 점검대상 : 학교급식 시행 학교
- 점검내용 :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 실태 등 학교급식 전반
 - 학교급식 운영계획, 목적대로 적정사용,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 내역 일치 여부, 식재료 구매 및 대금결제 절차, 식재료 검수·재고관리 등
- 점검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합동 현장점검(1개교 2~3인)

카.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사업

-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시 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사업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모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02
- 제출일 : 2018.10.17.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심의결과 : 2018.12.20. 원안가결

-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6억5천3백만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3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18억1천5백만원) 등 총 3건에 27억 6천 8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고자 제출하였음.

〈 평생교육국의 일반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사업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099,800	4,752,800	△653,000	△13.7%
민간위탁사업비	4,054,800	4,707,800	△653,000	△13.9%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	653,000	0	653,000	순증
민간위탁사업비	653,000	0	653,000	순증

세부사업/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감률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0	300,000	△300,000	△100%
시설비	0	300,000	△300,000	△1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0	0	300,000	순증
시설비	0	0	300,000	순증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300,000	2,115,000	△1,815,000	△85.8%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2,115,000	△1,815,000	△85.8%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1,815,000	0	1,815,000	순증
자치단체자본보조	1,815,000	0	1,815,000	순증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6억5천3백만원)’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의 공사비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3억원)’는 공사계약을 위한 선금금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18억1천5백만원)’는 노원구, 구로구, 도봉구의 하반기 집행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대규모의 사업을 자치구의 재정과 역할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시는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사업들은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소규모 생활서비스 시설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격차 해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여부 및 보여주기식 특별회계 전환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본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구체적 사업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시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별 기본계획과 서울시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과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과 정책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단순한 특별회계 설치보다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격차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도 균형발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바, 특별회계 간 사업의 재분류를 통해 특별회계 성격에 맞는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